

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양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31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17.

발 의 자 : 이양수 · 박준태 · 서범수
이철규 · 김소희 · 강대식
이달희 · 박정하 · 최은석
이헌승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는 부족한 실정임.

그런데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관련 지표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경우 약 70%가 70세 이상 고령자일 뿐만 아니라, 독거비율 또한 높아 일반 국민들보다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어, 이들을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의 신체적·정신적 상황을 고려한 고독사 관련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, 실태조사 및 자료 제공 요청에 관하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(안 제13조의2 신설).

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3조의2(국가유공자에 대한 특례) ①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(이하 “국가유공자”라 한다)의 신체적·정신적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-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3년마다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.
- ③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④ 그 밖에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3조의2(국가유공자에 대한 특례) ①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(이하 “국가유공자”라 한다)의 신체적·정신적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</u> <u>② 국가보훈부장관은 3년마다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.</u> <u>③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</u>

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④ 그 밖에 국가유공자의 고독
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
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